

2023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(안) 검토보고

2022.11.

전문위원 이 성 호

1. 제안이유

- 2023년도 도시관리국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(안)을 편성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.

2. 주요내용

- 2023년도 성북구 세입 세출 예산(안)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후면과 같음

3. 관련법규 : 지방자치법 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
4. 검토의견

■ 예산규모

(단위:천원)

구 분	2023년 예산(안)	2022년 예산	증 감 액	증감률(%)
세 입	5,985,839	4,628,616	1,357,223	29.3 %
세 출	16,841,810	14,612,542	2,229,268	15.3 %

■ 세입현황

□ 총 관

(단위:천원)

구 분	2023년 예산(안)	2022년 예산	증 감 액	증감률(%)
합 계	5,985,839	4,628,616	1,357,223	29.3 %
일반회계	2,660,591	2,065,822	594,769	28.8 %
특별회계	3,325,248	2,562,794	762,454	29.8 %

□ 부서별 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2023년 예산(안)	2022년 예산	증 감 액	증감률(%)	
합 계	5,985,839	4,628,616	1,357,223	29.3%	
일반회계	소 계	2,660,591	2,065,822	594,769	28.8 %
	주택정책과	1,162,221	1,004,721	157,500	15.7 %
	주거정비과	4,500	1,000	3,500	350 %
	도시계획과	0	0	0	0
	도시재생과	0	0	0	0
	건축과	101,543	117,552	△16,009	△13.6%
	공원녹지과	1,392,327	942,549	449,778	47.72%
특별회계	소 계	3,325,248	2,562,794	762,454	29.8 %
	주택정책과	369,007	342,461	26,546	7.8 %
	건축과	2,956,241	2,220,333	735,908	33.1%

□ 세입 검토의견

- 도시관리국 2023년 세입예산은 59억8,583만원으로 성북구 총 예산규모 (9,650억5,148만원)의 0.62% 비중 임.

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8.8%(5억9,476만원) 증액된 26억6,059만원,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.8%(7억6,245만원) 증액된 33억2,524만원으로 편성 됨

- 주택정책과는 전년대비 15.76%(1억5,750만원) 증액된 11억6,222만원으로, 주요내용은 ▲무단증축 이행강제금으로 1억6,000만원 증액된 11억2,000만원, ▲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시비보조금 4,222만원 임
- 주거정비과는 전년대비 350%(350만원) 증액된 건축이행강제금 450만원이 편성 됨
-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는 세입예산이 없음.

- 건축과는 전년대비 13.6%(△1,600만원) 감액된 1억154만원으로, 주요내용은 ▲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792만원 감액 된 9,055만원, ▲건축법, 건축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,098만원이며 전년대비 보조금은 편성되지 않음
- 공원녹지과는 전년대비 47.7%(4억4,977만원) 증액된 13억9,232만원으로, 주요내용은 ▲세외수입으로 공원 이용프로그램 참가비 1,300만원,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3,000만원이며, ▲국고보조금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단기 등 9건 4억2,633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6억1,700만원 등 11건 9억1,459만원으로 보조금이 33.2% 증액된 13억4,092만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보조금에 해당 됨
-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주택정책과는 전년대비 7.8%(2,654만원) 증액된 3억 6,900만원으로,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무단증축 이행강제금으로 지난년도 수입 8,900만원과 현년도 2억8,000만원임.

건축과는 전년대비 33.1%(2,654만원) 증액된 29억5,62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▲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2,755만원,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5,472만원(지난년도 수입 3,010, 현년도 2,462)과 순세계잉여금 37% (7억2,257만원) 증액된 26억6,883만원이 편성되었음.

■ 세출현황

□ 총 괄

(단위:천원)

구 분	2023년 예산(안)	2022년 예산	증 감 액	증감률(%)
합 계	16,841,810	14,612,542	2,229,268	15.3 %
일반회계	13,724,554	12,269,095	1,455,459	11.1 %
특별회계	3,117,256	2,343,447	773,809	33 %

□ 부서별 현황

(단위:천원)

구	분	2023년 예산(안)	2022년 예산	증 감 액	증감률(%)	
합	계	16,841,810	14,612,542	2,229,268	15.3%	
일반회계	소	계	13,724,554	12,269,095	1,455,459	11.1 %
	주택정책과	1,797,271	1,650,831	146,440	8.9 %	
	주거정비과	681,956	677,374	4,582	0.7 %	
	도시계획과	467,756	619,391	△151,635	△24.5 %	
	도시재생과	368,795	158,958	209,837	132%	
	건축과	216,248	220,805	△4,557	△2.1%	
	공원녹지과	10,192,528	8,941,736	1,250,792	14.0 %	
특별회계	소	계	3,117,256	2,343,447	773,809	33%
	건축과	3,117,256	2,343,447	773,809	33%	

□ 세출 검토의견

○ 도시관리국 2023년 세출예산은 168억4,181만원으로 성북구 총 예산 규모의 (9,650억5,148만원) 1.75% 비중 임.

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.1%(14억5,545만원) 증액된 137억2,455만원,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%(7억7,380만원) 증액된 31억1,72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부서별 편성 내용으로는

- 주택정책과는 전년대비 8.9%(1억4,644만원) 증액된 17억9,727만원으로, 주요내용은
 - 신규 편성사업은 없으며
 - 증액 부분은 ▲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으로 민간사업보조 시설보수 등 1억 3백만원이 증액된 5억4,816만원

- ▲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커뮤니티 공모 등 2,163만원 증액된 5억949만원
 - ▲행정운영경비 2,250만원 증액된 6억9,173만원으로 편성 되었음.
 -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▲공동주택 활성화 4개사업 10억9,876만원
 - ▲위법건축물 정비 678만원이 편성 됨
- 주거정비과는 전년대비 0.7%(458만원) 증액된 6억8,195만원으로 주요내용은
-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으며
 - 증액 부분은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지원으로 심사수당 등 504만원 증액된 1,604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
 - 전년도와 동일하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으로 6억원이 편성 됨
 -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▲장위·길음·미아 등 재정비촉진 4개사업 4,314만원
 - ▲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 3개사업 6억2,262만원
 - ▲행정운영경비 1,618만원이 편성 됨
- 도시계획과는 전년대비 24.5%(△1억5,163만원) 감액된 4억6,775만원으로
- 주요 내용은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으며
 - 증액 부분은 ▲성북구 중점지역 도시전략계획 수립 지원 연구용역비 증가 등 3억1,990만원 증액된 3억5,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
 - 감액 부분은 ▲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억5,000만원 감액된 5,200만원으로 감편성 되었음
 - ▲전년도 대비 도시계획 및 관리 중 세부사업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이 만료 되었고, 장위 동방골목길 재생사업은 주민 요구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세부사업 폐지(전년도 대비 2억2,153만원 감액)
 -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▲효율적인 도시개발 계획 및 관리 3개사업 3억8,818만원
 - ▲지구단위계획관리 5,200만원, ▲도시계획 및 관리 1,727만원
 - ▲행정운영경비 1,029만원이 편성 됨

- 도시재생과는 전년대비 132%(2억983만원) 증액된 3억6,879만원으로 주요내용은
 - 신규 편성 3개 사업으로
 - ▲장위어울림센터운영으로 인건비 등 4,776만원
 - ▲모아타운사업으로 관리계획수립 용역 등 1억5,500만원
 - ▲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아카데미 결과물 제작 설치 등 3,920만원이 신규 편성 됨
 - 증액 부분은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로 시설비 증가에 따른 2,424만원 증액된 3,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음
 - 감액 부분은 빈집정비사업으로 실태조사 등 1,200만원이 감액된 3,600만원으로 감편성 되었음
 -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▲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추진 3개사업에 9,576만원
 - ▲소규모주택재생 사업추진 2개사업 1억6,064만원
 - ▲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4개사업 1억74만원
 - ▲행정운영경비 1,165만원이 편성 됨

-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.1%(△455만원) 감액된 2억1,624만원으로,
 - 주요내용은 일반 세출 신규사업은 없으며
 - 증액 부분은 한옥 발전 및 보존사업으로 수선비 지원 2,000만원이 증액된 4,858만원으로 편성 되었고
 - 감액 부분은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으로 검사원 수당 감소 등 1,810만원 감액된 9,401만원으로 감편성 되었음.
 - 예산 편성내역으로 도심건축물 경관개선 지원 3개사업 및 효율적인 한옥 보전 관리로 1억9,745만원과 기본경비 1,879만원이 편성 됨

- 건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%(7억7,380만원) 증액된 31억1,725만원으로
 - 주요내용은 신규 사업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360만원
 - 증액 부분은 ▲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890만원 증액된 9,658만원
 - ▲인력운영비로 임기제 인건비 1,426만원, 재무활동 예탁금 7억 9,165만원이 증액 됨

-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▲건축물의 체계적 안전관리 4개사업 1억4,639만원
▲인력운영비 1억4,746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28억2,339만원이 편성 됨
- 공원녹지과는 전년대비 14%(12억5,079만원) 증액된 101억9,252만원으로,
신규 편성사업 6개, 주요 증·감 부분으로 증액 8개, 감액 2개 사업으로 편성 되었음.
- 신규 예산 편성사업은 ▲범바위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으로 5억4,400만원
▲주민과 더 가까운 구청사 조경 개선으로 2억원
▲아름다운 성북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공분분식 2억원
▲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으로 5백만원
- 증액 부분은 ▲도시공원 유지관리로 4,847만원 증액된 10억3,913만원
(시비 6억1,700, 구비 4억2,213)
▲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지 정비 2,000만원 증액된 5,000만원
▲아름다운나무 유지관리사업으로 생육환경개선 등 2,500만원이 증액된 5,800만원
▲산림 및 녹지유지관리로 개운산 등산로정비, 북한산 화장실 교체 등 4억
1,661만원 증액된 6억4,441만원
▲주민 건강을 위한 헬스기구 설치로 1,500만원 증액된 4,500만원
▲가로수 위탁관리로 9,000만원 증액된 2억2,000만원
▲가로수 가지치기로 6,000만원 증액된 2억원
▲수목식재 사후관리로 기간제 인건비 등 2,594만원 증액된 8억9,495만원
(시비 1억6,500만원, 구비 7억2,986만원)으로 편성 되었고
- 감액 부분은 ▲마을마당·쉼터 정비 및 유지관리로 시설비 감소 등 6,342만원
감액된 6억8,434만원
▲공원조명등 유지관리로 쉼터 유지관리비 감소 등 4,700만원 감액된 5억
9,560만원으로 감편성 되었음.
-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▲생활권공원 확충 2개사업 13억8,308만원

- ▲공원정비 및 관리 5개사업 28억3,622만원
- ▲녹지정비 및 관리 13개사업 20억6,347만원
- ▲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6개사업 2억1,861만원
- ▲도심속 조경확충 6개사업 9억2,711만원
- ▲도심속 조경관리 5개사업 14억8,715만원
- ▲도시농업활성화 2개사업 1억857만원
- ▲행정운영경비 11억6,827만원

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, 제36조의2¹⁾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²⁾조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-
- 1) 제36조(예산의 편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·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.
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
- 제36조의2(성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[이하 "성인지 예산서"(性認知 豫算書)라 한다]를 작성하여야 한다.
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) 제42조(예산의 편성)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.